

# 외국어 통·번역 지원사업 관련 서약서

1. 통·번역 신청의 납품기한은 원칙적으로 신청업체의 납품기한 이내로 하되, 분량이 과다하여 상당한 처리시간을 요할 경우에는 통·번역 수행업체와 협의하여 납품기한을 연장하여 처리할 수 있다.
2. 신청업체는 통·번역 수행업체가 제출한 통·번역 결과 중 통·번역 수행업체의 사유로 인해 발생한 하자에 대해 30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실은 통·번역 수행업체가 책임진다.
3. 통·번역 수행업체의 사유로 하자가 발생할 시 신청업체는 인천상공회의소를 통하여 통·번역 수행업체에 재 통·번역을 요구할 수 있다. 단, 동일건의 재 통·번역 요구가 2회를 초과할 수는 없다.
4. 인천상공회의소가 지원하는 범위 이외의 비용 및 견적산정과 관련한 모든 책임은 신청업체와 통·번역 수행업체에게 귀속되며, 이에 대하여 인천상공회의소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중대한 오역으로 인한 통·번역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신청업체와 통·번역 수행업체가 분쟁을 해결한다.
6. 통·번역 수행업체가 신청업체에게 제공하는 통역서비스 기간에 발생하는 통역요원의 신변안전 및 사고의 사전·후 조치를 포함한 모든 과정은 통·번역 수행업체와 신청업체의 협의 하에 처리되며 인천상공회의소에는 어떠한 귀책사유도 없다.

당사는 2023년 외국어 통·번역 지원사업을 신청하면서 위 내용을 숙지하였음을 서약합니다.

2023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귀하**



